

(주)리치먼드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인력비율 미충족,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 모범 기준상의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3.9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2013.12.31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충족	미충족	미충족
5.6%(1명)	0%(0명)	5.9%(3.3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총임직원수가 적어 정보기술부문인력이 정보보호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예산비율은 지난 제6기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지출이 있어서 금년에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정보보호부문 인력비율 및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4년 02월 11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4. 01. 28.

(주)리치먼드자산운용 대표이사 길 진 용